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

이 규정은 에스엘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칭함)가 관계법령,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독립이사후보 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, 권한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(권한)

- ①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.
- ②위원회는 1 항에서 추천한 독립이사후보자의 수락의사 유무를 확인하여 후보자로 결정한다.
- ③위원회는 독립이사후보를 추천함에 있어서 상법 제 542 조의 6 제 2 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- ④위원회는 추천된 독립이사후보의 수가 본인 거절 등의 사유로 선임예정인 독립이사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 독립이사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(구성)

- ①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독립이사이어야 한다.

제 5 조(위원장)

- ①위원회는 제 8 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.
- ③위원장의 유고시에는 (위원회에서 정한 위원)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(소집권자)

-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 5 조 제 3 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7 조(소집절차)

- ①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3 일전에 각 위원에 우편, 모사전송(FAX),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8 조(결의방법)

- ①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.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②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의결권은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9 조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1. 독립이사후보의 추천
- 2. 기타 독립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 10 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인,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1 조(통지의무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2 조(의사록)

-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3 조(자료요청 등)

-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

부 칙(2020. 6. 22)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6. 3. 26)

제 1 조(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) 제 1 조, 제 3 조, 제 4 조, 제 9 조 개정규정은 2026 년 7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.